

과학기술대학 학생회칙

회칙개정위원회

<input type="checkbox"/> 장승우 (위원장)	<input type="checkbox"/> 최수빈 (과기대추천)	<input type="checkbox"/> 김우중 (반도체 물리 전공)	<input type="checkbox"/> 정은서(환경시스템공학과)
<input type="checkbox"/> 백주훈 (전자기계융합공학과)	<input type="checkbox"/> 이윤주(디스플레이 융합 전공)	<input type="checkbox"/> 이강현 (응용수리학부)	<input type="checkbox"/> 김경태 (컴퓨터 융합 소프트웨어 학과)
<input type="checkbox"/> 정상윤 (인공지능사이버보안학과)	<input type="checkbox"/> 박은솔 (전자 및 정보공학과)	<input type="checkbox"/> 최준혁 (신소재화학과)	<input type="checkbox"/> 박동근(식품생명공학과)
<input type="checkbox"/> 장현서(미래모빌리티학과)	<input type="checkbox"/> 변기국(인공지능형반도체 학과)	<input type="checkbox"/> 임우진 (자유공학부)	<input type="checkbox"/> 최헌제(생명정보공학과)

전 문

대학은 자유로운 진리탐구와 창조적 이념을 추구하며 그 어떠한 외부의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학문 탐구와 민주적 의사의 토론의 장이 되어야 한다.

선배들의 일제하 민족해방 투쟁과 4.18로 시작된 4.19혁명, 80년 광주 민주항쟁, 87년 6월항쟁으로 이루어진 반독재, 반외세의 민주 항쟁 운동을 계승한 오늘의 대학정신을 바로 세워 분단된 민족의 자주·민주·통일의 실현을 위해 싸워나가야 할 시대적 소명의 의식을 지니고 정진해 나아간다.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는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과학기술대학 학생회는 자유·정의·진리의 건학정신을 이어받아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학생회 운영을 통해 애국하는 청년학도의 사명을 수행하고 세종캠퍼스의 자율적인 발전과 구성원의 자주성 고양을 실현한다.

이에 그간 준비되어 온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과학기술대학 회칙을 제정하는 바이다.

1장 총칙

1조 (명칭) 본회는 "고려대학교 과학기술대학 학생회"라칭한다

2조 (목적) 본회는 본회 회원의 자주적인 참여와 민주적인 운영을 통하여 본회 회원의 선진적인 의식의 함양과 대학의 자주적인 발전을 도모함과 아울러 과학적이며 실천적으로 학문을 탐구하여 민중이 주인 되는 사회를 실현하고 자유, 정의, 진리의 정신에 바탕을 두어 올바른 고대의 발전과 조국의 자주, 민주, 통일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3조 (회원) 본회의 정회원은 본교 과학기술대학 학사 과정 재학 중인 자로 한다.

- ① 본회의 정회원은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과학기술대학의 모든 재학생으로 한다.
- ② 휴학생은 휴학 기간 동안 준회원이 되며, 제4조(회원의 권리 및 의무)에 제1항, 제5항을 제외한 나머지의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 ③ 대학원생은 회원에서 제외한다.
- ④ 졸업, 자퇴, 퇴학 등으로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과학기술대학 학부과정 소속이 아니게 된 자는 그 즉시 회원 자격을 잃으며, 정학 등의 사유로 등교가 정지된 자는 그 동안 회원 자격이 정지된다. 단, 회원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회원 자격을 박탈당한 자는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회원으로 인준 받을 수 있다.
- ⑤ 국내, 외국대학의 재학으로 교환, 방문학생 또는 이에 따르는 자격으로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과학기술대학 학부과정을 수학하는 자는 그 동안 교류회원이 된다. 교류회원은 준회원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 ⑥ 준회원 중 정회원 등록 절차를 이행한 자는 해당학기 남은 기간 동안 정회원이 된다. 단, 중앙선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선거 후보자 등록 마감일 다음 날부터 당선 공고일까지는 정회원으로 등록할 수 없다.

4조 (회원의 권리 및 의무)

- ① 회원은 본회 의장단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 ② 회원은 본회의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회의 활동과 관련한 제반의사결정에 투표할 권리를 갖는다.
- ③ 회원은 본회의 각종 회의 및 문서 책자를 통하여 본회의 활동에 필요한 의견을 개진할 권리를 갖는다.
- ④ 회원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활동의 권리를 보장받는다.
- ⑤ 회원은 회비 납부를 선택할 권리를 갖는다.
- ⑥ 본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 ⑧ 본회의 회원은 본회가 본회 회칙에 따라 결정한 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5조 (기구) 본회는 과학기술대학 학생총회, 과학기술대학 학생 대표자 회의, 운영위원회, 집행위원회, 과 학생회로 구성된다.

6조 (특별 기구)

- ① 본회는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특별 기구를 둘 수 있다.
- ② 특별 기구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설치하고 과학기술대학 학생회장이 구성한다.

7조 (학교당국과의 협의)

- ① 본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 당국과의 협의 또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본회의 각 기구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학교 당국과의 협의, 조정을 할 수 있다.
- ② 본회는 다음과 같은 학교 당국의 제반회의의 심의사항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권리가 있다.

-본회의 활동에 관련한 회원의 징계사항에 관한 징계위원회는 당사자가 출석하여 변호할 권리를 갖는다.

- 회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 학생 활동 및 학생신분에 관계된 학칙개정에 관한 사항
 - 기타 본회의 운영위원회와 학교 당국이 필요하다고 요구되는 사항
- ③ 본회의 제반회의에서는 그 회의의 의장과 학교당국이 필요하다고 공동으로 인정한 경우 학교당국에 그 회의의 참석과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2장 과학기술대학 학생총회

1조 (구성) 과학기술대학 학생총회는 본회의 정회원 전체로 한다.

2조 (지위) 과학기술대학 학생총회는 본회의 활동에 대하여 최고 의결기구이다

3조 (권한) 과학기술대학 학생총회는 학생회칙의 개폐 및 회원 전체에 대한 중대한 사항을 토론, 의결한다.

4조 (의장) 과학기술대학 학생총회의 의장은 과학기술대학 학생회장이 맡는다. 만일 과학기술대학 학생회장의 궐위 시에는 각 학과 회장 중 과학기술대학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 1인이 그 직을 맡는다.

5조 (소집)

- ① 과학기술대학 학생총회는 과학기술대학학생대표자회의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과학기술대학학생대표자회의 의원 1/3이상, 과학기술대학운영위원회 2/3이상, 회원 1/10 이상의 연서¹⁾에 의한 소집요구가 있을 때 과학기술대학 학생회장은 반드시 소집해야 한다.
- ② 과학기술대학 학생총회 소집은 소집일로부터 최소한 7일 전에 공고가 되어야 하며 안건과 안건에 대한 설명도 5일전에 공고가 되어야 한다. 단, 긴급 사안으로 과학기술대학 학생회장이 직접 소집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6조 (역할) 과학기술대학 학생총회는 본회의 활동의 중대한 사안을 토의한다. 단, 총회가 열리지 못하면 총 투표로 결정할 수 있다.

7조 (의결)

- ① 학생총회는 회원의 1/5 이상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학생총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안건이 있을 경우 과학기술대학 전체학생대표자회의로 위임된다.

3장 과학기술대학 학생 대표자 회의와 운영위원회

1) 하나의 서류에 2명 이상이 함께 서명하는 것.

1절 과학기술대학 학생 대표자회의(단학대회)

1조 (구성) 과학기술대학 학생 대표자회의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① 과학기술대학 학생회장, 과학기술대학운영위원회 전원, 각 과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각 과 운영위원 수는 기본 4명으로 하되 해당학과의 학생수가 200인 이상일 경우는 50인이 더 많아질 때마다 1인씩 대의원을 선출한다.
- ③ 각 과 운영위원은 학번대표, 예비역회장, 여학생회장, 과내 각 소모임 회장 등이 포함 된다
- ④ 과학기술대학 학생 대표자회의 대의원은 자기 선거 단위 회원들의 전권을 위임받는다.

2조 (지위) 과학기술대학 학생 대표자회의는 과학기술대학 학생총회가 열리지 못할 경우, 최고 결정권을 위임받아 활동한다.

3조 (제한) 과학기술대학 학생대표자회의의 결정은 과학기술대학 학생총회의 결정을 위배해서는 안 된다.

4조 (권한) 과학기술대학 학생 대표자 회의는 제 1장 제 2조에 명시된 본회의 목적을 고려하여 학생 자치활동의 영역에 속하는 모든 문제를 자의대로 심의하여 결정할 권한이 있다.

과학기술대학 학생 대표자회의의 절대적인 권한에 속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 ① 과학기술대학 회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며
- ② 과학기술대학 학생회 활동에 필요한 각종 세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며
- ③ 과학기술대학 학생회 사업계획과 정책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며
- ④ 학생회비에 대해 심의하며
- ⑤ 과학기술대학 예산 및 결산을 심의 승인하며
- ⑥ 과학기술대학 학생회 집행위원회 인준권을 가지며
- ⑦ 새로 구성된 기구나 집행부서에 대한 심사 및 인준권을 가지며
- ⑧ 과학기술대학 학생회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 ⑨ 과학기술대학운영위원회와 과학기술대학 학생회 집행위원회의 부적당한 결정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또한, 과학기술대학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의 그 밖에 여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5조 (의장)

- ① 의장은 과학기술대학 학생 대표자 회의의 운영전반을 관장하며 대외적으로 과학기술대학 학생대표자 회의를 대표한다.

- ② 의장은 과학기술대학 학생회장이 당연직으로 한다.

6조 (소집) 과학기술대학 학생 대표자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둔다.

- ① 정기회의는 매 학기 초에 의장이 소집한다.
- ② 임시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운영위원회의 과반수이상의 발의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단, 긴급을 요할 때는 의장이 소집할 수 있다.
- ③ 의장은 대회 전 7일 이전에 대회를 공고하여야한다.

7조 (요구권) 과학기술대학 학생 대표자회의는 다음과 같은 각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 ① 회의 진행에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 집행 위원회에 대해 서류제출 및 출석요구
- ② 과학기술대학 학생총회의 소집요구

8조 (탄핵 및 의결권)

- ① 과학기술대학 학생 대표자회의는 과학기술대학 학생회장이 회칙을 위배하였거나 회의 업무 수행 상 부당한 행위를 하였을 때는 탄핵할 수 있다.
- ② 탄핵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연서로 발의하고 재적의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의원의 2/3 이상의 찬성에 의해 의결한다.

9조 (개의 및 의결) 과학기술대학 학생 대표자회의는 재적의원 1/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 의결한다.

9의 2조 (안건 상정)

- ① 회칙 개정을 제외한 기타 안건은 운영위원회가 개회 전까지 안건을 상정한다.
- ② 재적대의원 1/5 이상의 연서로 개회 전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2절 운영위원회

1조 (지위) 운영위원회는 본 회의 최고 운영기구이다. 과학기술대학 학생 대표자회의가 열리지 못한 경우 회칙 개정을 제외한 그 결정권을 위임받아 활동한다.

2조 (구성) 운영위원회는 과학기술대학 학생회장과 각 과 학생회장으로 구성한다.

3조 (의장) 과학기술대학 학생회장은 운영위원회 의장으로서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4조 (업무 및 권한)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

- ① 과학기술대학 학생회의 제반 사업을 조정한다.
- ② 과반수의 발의로 과학기술대학 학생 대표자회의나 과학기술대학 학생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집행국의 업무 진행에 대하여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 심의한다.
- ④ 회칙 개정안을 발의하여 과학기술대학 학생 대표자회의에 상정한다.
- ⑤ 기타 과학기술대학 학생 대표자회의의 의결을 요하지 않는 제반사항을 결정한다.
- ⑥ 운영위원회는 각 과 학생회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을 보고하고 집행위원회와 각 과 학생회의 활동을 보고 받는다.

5조 (정기회의와 임시회의)

- ① 정기회의는 매달 1회로 한다. 정기 회의 일정은 운영위원회 위원들의 의결을 통하여 분기 단위 회의 일정을 결정한다.
- ② 임시회의는 의장 또는 운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6조 (의결) 운영위원회는 재적 위원 2/3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장 과학기술대학 학생회장 및 집행위원회

1절 과학기술대학 학생회장

1조 (과학기술대학 학생회장)

- ① 과학기술대학 학생회장은 과학기술대학 학생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과학기술대학 학생회장은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과학기술대학 학생 대표자 회의의 의장이 된다.
- ③ 과학기술대학 학생회장은 본회의 각종 대회 (외) 활동을 관장한다. 단, 이 업무는 경우에 따라 위임할 수 있다.

2조 (임기) 과학기술대학 학생회장의 임기는 당선 공고 후 일주일부터 차기 과학기술대학 학생회장의 당선 공고일 일주일 후까지로 한다. 단, 보궐선거 진행 시 해당년도 3월 31일까지 임기를 연장한다.

3조 (보궐) 과학기술대학 학생회장직이 공석인 경우 비상대책위원장을 선출한다. 단, 비상대책위원장의 후보자격은 첫째, 전년도 과학기술대학 학생회장의 임기를 연장한다. 둘째, 현 과학기술대학 학생회 소속 사무국장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한다. 셋째, 현 과학기술대학 소속 학과 및 학부 학생회장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한다. 넷째, 전년도 과학기술대학 소속 학과 및 학부 학생회장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한다.(단, 전년도는 총 치러진 해로 한다.) 다섯째, 4학기(2학년 수료)이상 수료한 과학기술대학 모든 정회원을 후보로 임명할 수 있다. 비상대책위원장의 임명은 과학기술대학 운영위원회의 인준으로 한다

4조 (업무 및 권한) 과학기술대학 학생회장은 다음과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

- ① 집행국 각 국장의 임명 및 해임권
- ②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그 업무를 주관한다.
- ③ 과학기술대학 학생 대표자회의의 의결사항 중 과학기술대학 학생회장의 직무에 해당하는 사항을 집행한다.
- ④ 기타 과학기술대학 학생회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실행한다.

2절 집행위원회

1조 (지위) 집행위원회는 본회의 최고 집행기구이다.

2조 (구성) 집행위는 과학기술대학 학생회장이 임명하고 운영위원회가 인준한 각 집행국 국장으로 한다.

3조 (국원) 각 집행국 및 위원회는 집행의 원활함을 위해 차장 및 국원을 둘 수 있다.

4조 (부서) 구체적인 부서와 그 업무에 관한 제반사항은 과학기술대학 학생회장이 구성하고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과학기술대학 학생 대표자회의의 인준을 받는다. 그 외에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다른 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5조 (권한 및 의무) 집행위원회는 과학기술대학 학생회의 영역에 속하는 모든 문제들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며 이 외에 속하는 것은 제외된다. 집행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일을 행한다.

- ① 과학기술대학 학생회와 대학문화의 발전을 위해 여러 정책을 강구하고 실행하며 그 지도의 책임을 진다.
- ② 과학기술대학 학생회의 중·장기 사업 계획 및 예산을 작성하며 단학대회에 제출한다.

- ③ 예산 집행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예산 집행에 관한 보고를 단학대회에 제출한다.
- ④ 필요한 경우에 각 과 단위 집행부와 국별 연석회의 또는 기타 특별 부서회의를 집행위원회하에 조직하며 운영위원회, 단학대회에 보고한다.
- ⑤ 단학대회, 운영위원회가 부여한 그 밖의 직권을 행사한다.
- ⑥ 과학기술대학 학생회의 사업을 모든 학우와 공유하고 함께 하기 위한 여타의 작업을 한다.
- ⑦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대학 학생회장의 동의를 얻어 학생총회, 단학대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구두로 혹은 서면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이상의 집행위원회 결정사항은 학생회 전체 차원에서 의무적으로 집행되어야 한다.

5장 과 학생회

1조 (과 학생회) 과학생회는 각 과의 최고 학생기구이며 각과의 회원 전체로 구성된다.

2조 (과 학생회장) 해당 과 학생회원, 학부 학생회원 전체의 직접 선거로 선출된 과 학생회장은 당해 과, 학부를 대표하며 과학기술대학 운영위원 및 과학기술대학 학생 대표자회의의 대의원이 된다.

3조 (회칙, 활동) 과 학생회는 과학기술대학 회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 학생회칙을 정할 수 있으며 활동은 이에 따른다.

4조 (회계보고) 과 학생회는 해당 학과 정회원, 학부 정회원 전체에게 학기당 1회 회계보고를 할 의무를 진다. 요청시 최소3일 최대 7일간 공시하는 것으로 한다.

5조 (선거) 학생회 선거는 비밀투표에 의한 보통, 평등, 직접선거를 행한다. 과 학생회장 선거는 각 과 학생회 회칙을 우선적으로 따른다.

6조 (선거시기) 선거는 매년 4분기 중에 실시하며, 선거에 대한 준비는 민주적, 공개적으로 실시한다. 단, 신설 학과의 경우 해당 학과의 학과장님 혹은 운영 교수, 직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과학기술대학 학생회가 선거관리위원회 역할을 수행, 과학기술대학 선거회칙 및 총학생회 선거 회칙을 준수하며 시행한다.

7조 (입후보자격) ① 과학기술대학 내 학과 운영위원, 즉 학생회장은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과학기술대학 개학 인원 한에서 입후보 자격을 갖는다. 단 재학 중인 학과에 출마 가능하다.

6장 재정

1조 (경비) 본회의 경비는 학생회비와 보조금으로 총당한다.

2조 (회계연도) 과학기술대학의 회계연도는 매해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3조 (경비와 관리) 본회의 학생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편성하며 학교당국에 회비의 징수 및 관리를 위임한다.

4조 (예산)

- ① 과학기술대학 학생회 운영위원회는 매 회계연도 예산을 편성하여 과학기술대학 학생 대표자회의에 제출하고 과학기술대학 학생 대표자회의에 심의 의결한다.
- ② 예산안이 과학기술대학 학생 대표자회의에서 의결하지 못하여 학생회 운영에 지장이 있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다.
- ③ 경비 지출에 대한 정산은 일반 회계 관리의 관행에 준한다.

5조 (결산보고) 결산보고는 학생회의 각 기구에서 보고된 것을 운영위원회에서 일괄 작성하여 과학기술대학 학생 대표자 회의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는다.

6조 (자치단위에 대한 예산 지원)

- ① 모든 지원은 집행부가 심의하고 운영위원회가 인준한다.
- ② 과학기술대학 학생회의 지향에 부합하는 대중적 기획 행사로, 단위 내부의 사업이 아니며 준비 주체가 과학기술대학 내 단위이어야 한다.
- ③ 과학기술대학 학생회 예산의 20%까지를 총 지원액으로 하며, 사업 예산 50%이하, 절대금액에서 5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이다.
- ④ 사업 2주전까지 사업계획서를 학생회 집행부에 제출하고, 사업시행 후 3일 이내에 내역을 제출한다. 단, 지원 내역은 영수증을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제7장 감사위원회

제1조 (지위) 감사위원회는 과학기술대학 학생회 업무 및 회계에 관하여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을 단과대 학생대표자회의로부터 부여받은 독립기구이다.

제2조 (권한) 감사위원회는 부정행위나 과실에 대해 과학기술대학학생회에 지체 없이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과학기술대학학생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감사목적에 부합하는 관련 정보의 제출 요구
2.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 요구
3. 회계 장부 및 관계 서류, 물품, 증빙 등의 제출 요구
4. 그 밖에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조사

제3조 (감사위원회의 구성)

- ① 감사위원회는 과학기술대학학생회의 업무와 관련된 제반 사항들을 감사한다.
- ②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은 감사목적이 명시된 단과대 학생회 정회원 5% 이상의 연서발의 또는 단과대 학생대표자회의 재적 대의원 과반의 연서발의로 한다. 그리고 구성요건을 충족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단과대운영위원회는 단과대학생대표자회의의 소집을 결정하여야 한다.
- ③ 감사위원회는 최소 5인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에도 최소 3인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예외적인 경우인지에 대한 판단은 단과대학생대표자회의에서 한다.
- ④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단과대학생대표자회의의 대의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위원장은 감사위원을 임명할 독점적·배타적 권한을 가지며, 위원회 구성이 완료 또는 변동되면 공중이 알 수 있게 공고하여야 한다.
- ⑤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는 감사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1. 과학기술대학 학생회장
 2. 과학기술대학학생회 집행위원회에 소속된 자
 3. 과학기술대학 학생회장이 임명한 자가 구성한 자치 기구에 소속된 자
 4. 기타 단과대학생대표자회의의 의결에 따라 자격이 제한된 자

제4조 (감사위원회의 결정)

- ① 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재적 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2/3 찬성으로 결정한다.
 1. 감사위원 임면 사유 발생
 2. 감사보고서 확정
 3. 징계 의견 확정

제5조 (감사위원회의 존속 기간 및 활동)

- ① 감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선출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반드시 구성되어야 하며, 구성된 다음 날부터 14일간 활동한다.
- ② 감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에 단과대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공중이 알 수 있게 공고하여야 한다. 보고한 다음 날부터 활동 기간이 7일 연장된다. 다만, 활동 기간의 연장은 1회에 한한다.
- ③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④ 과학기술대학 학생회는 감사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⑤ 과학기술대학 학생회는 자료 제출의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사 내용 일체를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 ⑥ 감사위원회는 활동 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단과대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보고서에는 위원회 활동사항과 함께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사위원회의 구성
 2. 감사위원회의 활동 기간
 3. 감사위원회의 감사목적
 4. 감사 중점 사항
 5. 기타 감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⑦ 감사위원회가 감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면 감사보고서에 징계의견을 명시하여 단과대운영위원회와 단학대회에 제출 및 보고하여야 한다.
- ⑧ 제6항의 절차가 완료되면 감사위원회의 임기는 즉시 종료된다.